朝鮮後期 享祀關係 文獻資料의 檢討

—《皇壇配享諸臣目錄》을 中心으로—

鄭 玉 子

머 리 말
1. 享祀關係 記錄의 實際
2. 皇壇(大報壇) 配享의 意義
3. 《皇壇配享諸臣目錄》의 內容
맺 음 말

머 리 말

조선왕조는 유교국가답게 제사가 많았고 그에 관한 기록 역시 적지 않다. 제사란 神靈에게 음식을 바쳐 정성을 표하는 예절이며 祭享, 또는 享祀로 표현되기도 한다. 특히 祭享이란 용어는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를 의미하며 祭祀의 높임말로 쓰였다. 그 대상은 크게 볼 때 산천, 초목 등 자연과 死者로 분류된다. 조선의 국가 儀典書인 《國朝五禮儀》의 분류에 의하면 吉禮가 전자에 대한 祭儀라면 凶禮가 후자에 대한 제의다.

조선초기 국가체제가 정비되고 성리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士林이 정치주도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성리학이념이 조선사회에 실현되는 과정에서 《朱子家禮》의 실천이 강화되었다. 士大夫의 예로서의 《朱子家禮》는 점차 확산되어 17세기 禮學이 발달하면서 冠·婚·喪·祭의 四禮가 기본이 되었다. 특히 金長生(1548~1631)의 《家禮輯覽》이 출간되자 《朱子家禮》에 토대를 두되 조선의 현실에 맞게 時宜性을 살린 禮書가 쏟아져 나오는 계기가 되었고 그 祭禮가 제사의 준거틀이 되었다.[1]

死者에 대한 제사도 국가적인 祭享의 대상, 사회구성단체의 享祀대상, 그리고 가문이나 씨족 등 혈연관계 祭祀대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가 주관하는 경우, 성균관의 文廟와 宗廟에 행하는 제향이 중심이다. 사회구성단체에 의한 제사는 지방의 향촌사회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던 書院이나 祠宇에서의 享祀가 대표적인 것이다.

文廟에 대한 제향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聖人·哲人·賢人·先正에 대한 공적인 제의로서 이들은 만인에게서 절받을 수 있는 師表가 되는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이미 역사적 평가를 거쳐 文廟에 從祀되었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면 이들을 재평가하는 釐正작업을 하게 된

* 필자 :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1) 拙著《朝鮮後期 知性史》(1991, 一志社) 1장 2절 沙溪 金長生의 禮論

다. 특히 중국 儒賢들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은 實踐과 行實의 정당성 여부였다. 이 文廟祀典의 釐正은 조선이 성리학이념을 구현해 가는 하나의 장치이기도 하였다.(2)

아울러 각 정파는 자파의 학문적 淵源에 관련되는 인물을 先正이라 하여 文廟에 종사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자신들의 학파나 정파의 인물이 문묘에 제사대상이 되는 것은 학문의 정통성과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지름길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에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 書院·祠宇에서 제사한 인물들은 倭亂과 胡亂에 순국한 忠臣·烈士·義人들이 주류다. 이는 양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조선후기 사회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벌인 국가의 추모사업에 기인한 것이다. 祠宇가 순전히 享祀를 위해 건립된 데 비해 書院은 원래 교육기능이 위주이고 향사기능은 부차적이었다. 그러나 17세기 말 18세기 초 숙종대에 이르러서는 本末이 전도되어 제사기능이 더 강화되었다. 書院·祠宇의 건립은 後孫이나 門人, 혹은 鄕人에 의해 추진되었다. 각기 同族의 유대강화, 학파의 계승과 黨勢의 확장, 鄕班의 자기보호와 鄕權의 장악이라는 목적성을 내포하고 움직였지만 결국은 후손·문인·향인이 합력하는 양상을 보였다. 어떤 院祠가 제향대상인의 후손들이 족적 유대를 유지하는 대개체가 되면서 동시에 그 인물의 당색을 지닌 당인의 근거지요, 또한 그 지방양반들의 향촌통제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合目的的인 존재였다는 것이다.(3)

이러한 지방사회의 書院·祠宇는 私設의 성격이 강하였다. 때로는 국가나 지방관이 주동이 된 경우도 있지만 극히 소수고 후손·문인·향인이 연계하여 私設하고 뒤에 국가의 공인을 얻어내는 賜額을 청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상도 지방의 경우 사액을 받지 못한 사설 성격의 서원·사우가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였다.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光海君~正祖) 경상도 지방에 건립된 서원·사우가 257개소인데 사액된 곳은 불과 55개소이므로 국가의 인가를 받은 곳은 $\frac{1}{5}$에 불과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濫設의 경향이 특히 심했다. 경기지역이 53개소로서 사액된 곳이 42개소인 것과 비교된다.(4)

따라서 향촌사회의 서원·사우의 필요성은 국가 자신보다 지방 士族의 자체적 필요에 의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고 퍼봉사자의 성격으로 보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국난에 순절한 忠臣·烈士나 學派의 道統에 있어 중심축에 놓이는 인물이었다. 이런 인물들은 한 곳에서만 享祀되는 것이 아니어서 여러 곳에서 중복 향사되었고 또 대부분이 사액된 곳에 奉祀되었다. 이에 비하여 한번만 享祀된 경우는 대부분 私設된 곳에서 혈연적 기반 위에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방사회의 書院·祠宇 被祀者 중 兩亂에 관련된 忠臣·烈士·義人에

(2) 拙著《朝鮮後期 文化運動史》(1988, 一潮閣) 1장 1절 文廟祀典의 釐正
(3) 鄭萬祚〈17~18世紀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韓國史論》2 서울대 國史學科 1975. 2)
(4) 위와 같음.

대한 추모사업을 국가에서는 어떻게 구현시켰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皇壇配享諸臣目錄》을 분석하고자 한다. 皇壇은 大報壇의 별칭으로 국가에서 祭儀를 행하던 文廟와 宗廟 외에 조선후기에 창설된 또 하나의 국가적 제의장치이다. 1704년 창덕궁 후원에 건립한 이 제단에 配享하게 되는 인물의 실천과 행위 규범 등을 고찰함으로써 大報壇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지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 지식인 사회의 여론이라 할 公論을 국가가 수렴하고 양난의 후유증 극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가가 수행해야했던 충신·열사 현창작업과 연관된 것이다.

1. 享祀關係 記錄의 實際

享祀關係 기록으로 대표적인 것은 《俎豆錄》·《書院可攷》·《東國院宇錄》·《列邑院宇事蹟》·《增補文獻備考》 등이 있다. 그 대부분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던 書院과 祠宇에 대한 事蹟 중심의 기록이다.(5) 이중에서 중앙의 文廟와 宗廟를 위시하여 지방 書院·祠宇까지 총체적으로 다루어 놓은 자료가 《俎豆錄》이다. 俎豆(조두)란 제사지낼 때 제물을 담는 제기를 뜻한다. 書院·祠宇에 대한 기록이 지방사회의 事蹟 중심의 제사관계 기록이라면 이 《俎豆錄》은 文廟로 시작하여 서울과 지방 전체를 제사대상인물 중심으로 엮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책을 처음 편찬한 사람은 李萬運(1723~1797)이다.(6) 박학다식으로 세상에 알려져 1782년(정조 6) 蔭叙로 돈녕부 참봉에 임명되고 《문헌비고》를 개정하여 보정하라는 왕명을 받고 9년에 걸친 작업 끝에 《增補東國文獻備考》를 편찬하였지만 간행되지 못하였다가 1903년(광무 7) 《增補文獻備考》로 간행되었다. 정조의 도서목록인 《群書標記》에 의하면 《增訂文獻備考》로 나와 있고 246권이며 寫本으로 표기되어 있다. 命撰書로 분류되어 있으며 蔭官 李萬運이 10여년 각고 끝에 이루어낸 결실이라 소개하였다. 《俎豆錄》은 바로 이 책의 부산물이 아닌가 싶다.(7) 역시 《群書標記》에 소개되어 御定書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정조의 해설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다.

> 이 책은 城內 祠院에 제사지내는 事蹟이다. 머리에 文廟從享과 太室配享을 게재하고 다음에 四都, 八道州縣 순서로 기록하였다. 한 서원마다 먼저 서원이름을 표시하고 다음에 腰食하는 여러 인물을 나열하였다. 그리고 祠院의 建置연혁과 享人(제사대상자)의 字·里(본관)·爵(벼슬)·諡號 등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대개 朝家에서 이미 額號를 내린 곳과 鄕賢으로서 사적으로 崇報된 곳을 모두 수합

(5)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書院·祠宇에 대한 다각도의 도표를 작성해 놓은 논문으로는 朴珠의 〈朝鮮 肅宗朝의 祠宇濫設에 대한 考察〉(《韓國史論》 6, 서울대 國史學科 1980)이 참고된다.

(6) 18세기 후반 정조대에 활동한 학자. 본관은 咸平, 字는 仲心, 아버지는 進士인 慶甲, 어머니는 咸陽 吳氏로 慶周의 딸. 조선의 典故에 밝은 인물로 정조에게 발탁되었다.

(7) 《增補文獻備考》의 學校考에 文廟·祠院總論·各道祠院 등 《俎豆錄》과 같은 내용이 나오며 1782년에 《文獻備考》 개정작업의 어명을 받아 1790년에 초고를 완성하였다. 1796년에 재보완의 어명을 받고 서유구 등과 그 작업에 착수하였다가 1797년에 사망하였으므로 《俎豆錄》의 편찬은 1790년부터 1796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해 보니 649개소에 이르렀다.[8]

서론적인 이 글에서 《俎豆錄》의 체제가 제시되어 있고 정조 당시에 649개소의 서원·사우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정조의 親撰題에

서원의 설립은 오래되었다. 廟宗(종묘에 제사함)에서 싹트고 學校에서 시작되었다.[9]

라 하여 서원의 기원을 「廟宗」과 「學校」에서 찾고 있다. 이어 그 원형이라 할 朱子의 白鹿洞書院을 제시하고 거기에 제향되던 중국 역대 인물을 나열한 후

우리나라는 文敎를 敎尙하여 비록 궁벽한 시골구석에서도 가야금이나 거문고의 음악을 안 수 있다. 바다 밖의 제주도나 변경의 종성 같은 곳에서도 그 의복은 弁皮(쉐피 : 풀껍질)이요, 소리는 侏離(주리 : 사투리)요, 풍속은 거칠지라도 오히려 집을 지어 先賢을 제사지내고 있다. 이로서 列聖朝의 교화가 300년이나 적시고 6,000리에 흘러 넘친 것을 알 수 있다.[10]

라고 조선왕조의 文敎를 자부하고 있다. 이어 구체적인 실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나라에 충성하고 가정에 효도하며 劬躬澡行(구궁조행 : 몸을 수고로이 하고 행실을 깨끗이 함)하고 修己治人(수기치인 : 자신을 닦아 남을 다스림)하여 살아서는 세상에 알려지고 죽어서는 社에 제사되니 찬란하게 빛나고 성하여 무수히 相望하니 前史에 비추어 보아 아직 듣지 못하였다.[11]

이어서 8道와 4都의 壇廟의 수를 宣額된 것 266개소, 아직 宣額 안된 것 383개소로 통계하여 제시하였다. 이 중에는 역대 君臣의 廟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서를 붙였다. 결론적으로 이 책을 보는 사람은

부러워하며 느끼고 두려워하며 생각하여 힘써 前脩를 따르고 古昔에 아름다운 이름을 독차지할 것인즉 이 책이 風敎에 보완됨을 어찌 작다고 할 것인가[12]

하였다. 이 책의 기본적 기능이 風敎, 즉 風俗 敎化에 있음을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13]

이만운의 《俎豆錄》에는 첫머리 文廟從祀 다음에 太室配享(太廟配享 : 宗廟配享)이 있다. 곧이어 지방의 書院·祠宇편으로 편집되어 있어서 大報壇관계 기사가 없다. 이 책의 성립연도는 1790년대 전반으로 추정되므로[14] 뒤에서 밝히는 바, 《皇壇配享諸臣目錄》보다 먼저 편찬된 것이다. 따라서 大報壇配享은 확정 안된 상태이므로 누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시대인 1918년에 간행된 《俎豆錄》에는 文廟와 太廟 다음에 大報壇이 보인다.

---

(8) 《羣書標記》 御定書 俎豆錄
(9) 위와 같음
(10) 위와 같음
(11) 위와 같음
(12) 위와 같음
(13) 風敎란 匪風(詩經의 篇名)의 뜻을 가르친다는 의미로도 쓰였다. 拙稿 〈正祖代 對明義理論의 整理作業〉 (《韓國學報》 69. 一志社. 1992. 겨울) 참조
(14) 주(7) 참조

그리고 이만운의 《俎豆錄》에는 太廟配享 기사가 영조대까지 정리되어 있고 「正宗室 兪彦鎬」라는 다른 필체의 추가기록이 보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만운이 일단 영조까지만 정리한 것을 정조 사후 유언호가 정조묘실에 배향되자 그 사실을 누군가가 追記해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15] 이에 비하여 일제시대에 나온 《俎豆錄》에는 太廟配享 기사에 憲宗까지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 책은 철종 때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大報壇關係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위치는 창덕궁 후원이고 설치연도는 肅宗 31년(乙酉)으로 되어 있다. 이 해는 1705년으로 실제 대보단은 1704년 12월 21일에 공사가 끝났는데 완성을 알리는 제의가 이 해에 행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같다. 제사일은 3월 上旬日이었고 뒤에 황제의 즉위일과 忌辰日이 추가되었다. 3월은 명이 망한 달이며 마지막 황제 毅宗의 忌日이 3월 19일이었다. 이 제례에는 大臣과 九卿이 望拜禮를 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被祀者는 明 太祖와 임진왜란때 「再造之恩」의[16] 당사자인 神宗, 그리고 마지막 황제인 毅宗이었다.

太祖 高皇帝 即位日 : 1월 4일
忌辰日 : 5월 10일
神宗 顯皇帝 即位日 : 6월 10일
忌辰日 : 7월 21일
毅宗 烈皇帝 即位日 : 8월 24일
忌辰日 : 3월 19일

이 세 황제의 配享人은 徐達[17], 李如松[18], 范景文[19]이었다. 徐達은 太祖를 도와 明을 건국하는 데 절대적인 공을 세운 인물로 太祖의 配享 신하이고 李如松은 神宗의 명을 받들어 임진왜란 때 조선에 파견된 장군이므로 神宗의 配享 신하로 지목된 것이다. 이여송은 그 선조가 조선인이라 하며 평양의 武烈祠에 石星·楊元·李如栢·張世壽·駱尙志와 함께 선조때부터 제향되고 있었다. 范景文은 1644년 明이 망할 때 순절하였으므로 毅宗의 配享 신하로 결정된 것이다.

---

(15) 1796년 이만운이 《문헌비고》 재보완작업의 어명을 받고 이듬해인 1797년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儒準이 아버지의 작업을 완수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추가기록도 그의 아들 이유준이 해 넣은 것으로 추측된다.

(16) 임진왜란때 明이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이 國家를 再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은혜라 하여 조선후기 사회에서 강조된 용어.

(17) 字는 大德, 젊어서 大志를 돕고 明 太祖를 도와 四方을 征略하고 中書右丞相까지 승진하였다. 뒤에 魏國公에 봉해지고 죽은 후 中山王에 追封되었다. 諡號는 武寧. 太祖는 그의 인격을 높이 평가하였다. (太祖嘗曰 受命而出 成功而旋 中正物庇 昭明乎日月 大將軍一人而已)

(18) 李成梁의 아들, 字는 子茂, 諡號는 忠烈, 젊어서부터 아버지를 從軍하여 兵機에 밝았다. 평양에서 왜구를 격파하고 遼東總兵을 제수받았다.

(19) 字는 夢章, 號는 思仁, 萬曆에 進士에 급제함. 文翰官을 역임하다. 동향인 魏忠賢이 用事하자 병을 칭하고 은퇴하였다. 毅宗때 다시 기용되어 工部尙書, 東閣大學士 등을 역임하고 機務에 入參하였다가 나라가 망하자 자결하였다. 諡號는 文貞.

이들을 주 제향대상으로 하여 양난에 순절하거나 의리를 지킨 忠臣·烈士·義人들이 대보단에 배향되었는데 특히 숙종대보다 영조대에 그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자손들을 제사에 참석시키는 조치도 병행되었다. 그러한 국가적 사업은 정조대에도 계속되어 1797년(정조 21)경 《皇壇配享諸臣目錄》으로 결집되었다. 이것은 같은 시기 《尊周彙編》의 편찬과 동일선상에서 진행된 작업이었다.[20]

2. 皇壇(大報壇) 配享의 意義

皇壇은 大報壇의 별칭이다. 1704년(숙종 30년 甲申)에 명나라가 망한지 1周甲이 되는 해임을 상기시키면서 창덕궁 후원에 마련했던 제단이다. 처음 이름을 지을 때부터 皇壇이라는 말이 거론되었지만 大報壇으로 확정되어 공식명칭이 되었으나 영조·정조대에 이르면 공식기록에도 皇壇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21]

이는 17세기 조선사회가 兩亂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국가재건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설정하였던 北伐論과 尊周論이라는 사상적 기초에서 성립되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무력으로 평화적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일시적으로」 중원의 주인이 된 청을 쳐서 복수하는 일은 조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임진왜란때 구원병을 파견하였던 명나라의 「再造之恩」에 보답하는 일로 생각하였다. 명나라 멸망 이후 중화문화의 유일한 계승자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던 조선에는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무법자인 청을 징벌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지식인사회의 여론이자 국민정서로 확산되어 있었던 것이다.

외래사상으로서의 성리학은 16세기 후반 退·栗(退溪 李滉과 栗谷 李珥) 단계에서 조선사회에 맞게 이론틀을 심화시킴으로서 「조선성리학」으로 토착화되었다. 그 이념은 1623년 仁祖反正 이후 조선후기 사회 전체에 뿌리를 내리고 향촌사회의 조직원리로 기능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은 중화문화의 수준에서 명나라와 함께 同文圈의 핵심이 되었다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었다. 이 질서를 청이 무력으로 와해시켰지만 조선은 명나라에 대해서 국제간의 의리를 지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청이 軍事大國이라면 명은 文化大國이요, 청과의 관계가 이해관계라면 명과의 관계는 의리관계라는 인식이었다. 따라서 무력을 숭상하고 힘의 논리에 의거하는 청나라에 대해서는 북벌론을, 문화가치를 존중하고 평화적 국제질서를 유지하려 하던 명나라에 대해서는 존주론을, 국가대의로 지도이념화하였던 것이다.

---

(20) 1796년에 《尊周彙編》의 편찬을 시작하였고 이 해에 누락되어 있던 인물들에게 追贈하거나 大報壇에 追配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當宇 丙辰」으로 《皇壇配享諸臣目錄》에 기록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해인 1797년(정조 21년)경에 이 책이 정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21) 《皇壇儀》·《皇壇增修儀》는 영조대에, 《皇壇從享儀軌》는 순조대에 나왔고 實錄에도 皇壇으로 나타나고 있다.

尊周論에서의 周나라는 中華의 대명사이다. 당시의 중화문화 수호논리는 이미 명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조선이 그 계승자이므로 조선문화 수호논리가 되는 것이었다. 즉 조선이 바로 중화라는 논리이므로 존주론에서의 주나라는 조선후기 그 시점에서는 바로 조선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조선중화주의가 성립되었던 것이다.[22]

대청복수론인 북벌론은 1662년 명나라의 명맥이 완전히 끊기면서 점차 실현가능성이 퇴색한 반면 대명의리론인 존주론은 강화되었다. 대명의리론의 구체적 장치로서 국가에서 설립한 것이 대보단이었다. 이는 원래 宋時烈(1607~1689)이 화양동계곡에 煥章庵이라는 건물을 지어 神宗과 毅宗 두 황제에 대한 제의를 행하고 있었던 사실에 근거하였다. 1689년 己巳換局에 송시열은 죽음에 임하여 그의 제자 權尙夏(1641~1721)에게 그 유지를 전하였다. 권상하는 스승의 유탁을 받들어 이 곳에 萬東廟를 설치하여 역시 神宗과 毅宗의 제사를 받들었다. 대보단은 이 만동묘의 이념성을 수용하여 그 뜻을 국가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신종과 의종 외에 태조까지 추가하여 합사하였다. 이는 지식인 사회의 여론이라 할 「淸議」가 반영된 것이었다.

북벌론과 존주론은 사실상 동전의 앞뒤라고 할 수 있었다. 북벌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內修外攘論(內治를 닦아 외적을 물리친다)으로 전환하고 있었으며 17세기 후반 조선사회에 있어서 自强之道를 강구하는 방법론이었다. 북벌준비를 위한 山城의 增·改築이 모두 방어용이었다는 데서 그 성격이 분명해진다. 존주론의 내실은 이 북벌론의 외피 속에 조선의 정체성을 다지기 위한 문화보존논리였다.

대보단 설립이 국가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1704년 1월 10일이었다. 숙종은 熙政堂에 모인 조정대신들에게 이 해가 명나라가 망한지 60년이 되는 환갑해임을 상기시키고 「不忘之義」를 강조하였다. 그 논의의 요지는 「復讐雪恥」의 의식이 퇴색하여 시효성을 상실하고 있는 시점에서 「自强之道」를 모색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內修外攘하기 위해서는 尊周論을 강화해야하며 그 구체적 장치로 大報壇의 설립이 모색된 것이다. 대보단 설립이 논의되는 도중 3월 19일 毅宗의 忌日에 일단 제의를 행하였고 10개월에 걸친 논의과정이 있었다. 비록 萬東廟를 모델로 하였지만 여러 가지 난점이 제기되어 建廟奉祀대신 設壇祭禮로 낙착되었다. 장소 선정도 청에 기밀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 하에 여러 곳이 물망에 올랐으나 최후에 창덕궁 후원으로 결정되었다. 壇號는 《禮記》의 「郊特牲」조의 한 구절인 「大報天而主日也」라는 郊天(하늘에 제사지냄)과 報德(덕에 보답함)의 뜻에서 意와 義에 합당하다는 결론으로 大報壇으로 하였다. 대제학이었던 宋相琦(1657~1723)의 제안이었다. 이 때 禁壇·皇壇·太壇 등의 명칭이 거론되었다. 이 때 거론되었던 皇壇이라는 명칭이 뒤에는 더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10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달 반의 공정 끝에 완성되었고 담당자는 예조판서 閔鎭厚,

(22) 주(13) 논문 참조

예조참판 金鎭圭, 호조판서 趙泰采 등 노론 핵심들이었다. 평소에는 空壇으로 두었다가 제사일에만 神位 등을 設行하였다. 이 대보단에서의 제사는 太廟에 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거행되었다.[23]

이 대보단에 兩亂의 忠臣·烈士를 配享하게 된 것은 1757년(영조 33년)을 기점으로 하였다. 이 해에 皇壇에서 望拜禮를 행하면서 그들의 자손에게 參班을 명하였다.[24] 明을 중심으로 하였던 중화문화질서를 유지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은 조선의 충신·열사이자 곧 명의 陪臣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배신이란 제후의 신하를 뜻하는데 조선국왕의 신하로서 明皇帝의 陪臣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중화문화를 핵으로 하는 평화적 국제체제 수호에 공이 있는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선이 곧 중화라는 조선중화주의의 입장에서 일체감의 강화로 나타났고 皇壇에 配享되는 것은 국가적 숭모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였다. 그것은 가문의 영광이자 자손의 영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창작업은 정조대에도 계속되어 아직 현창되지 못한 인물들을 찾아내어 관직을 追贈하고 諡號를 내리고 皇壇에 배향하는 조치를 꾸준히 하고 있었다.

이는 지방의 書院·祠宇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忠臣·烈士 현창작업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성리학적 이념을 국가·사회·개인 모두가 준수하여 도덕국가 건설의 방향으로 매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된 작업이었다. 지식인 사회의 운동을 국가가 수용한 장치인 대보단의 제향인물은 그의 연고지에 있는 書院이나 祠宇에서 동시에 제향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3. 《皇壇配享諸臣目錄》의 內容

《皇壇配享諸臣目錄》은 책이름 그대로 皇壇, 즉 大報壇에 配享된 여러 신하들에 대한 목록이다. 英祖까지만 廟號가 나오고 그 다음 기사에서는 「當宁」로 표현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정조 때 정리한 것이다. 특히 여러 인물의 追贈 기록에 「當宁 丙辰」이라는 기사가 산견된다. 이 해는 1796년(정조 20))이므로 그 다음해인 1797년경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25] 1796년은 《尊周彙編》이 편찬되기 시작한 해이며 연대표시에 있어서 干支만 쓰고 있는 점도 《尊周彙編》과 같다. 《尊周彙編》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兩亂의 忠臣·烈士에 대한 사적과 그 현창작업을 목록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尊周彙編》 편찬작업의 부산물이 아닌가 싶다. 편의상 내용을 표로 분류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表 1〉은 1636년 병자호란때의 忠臣·烈士에 대한 내용이다. 강화도와 남한산성에 分朝

(23) 拙著《朝鮮後期 文化運動史》1장 2절 大報壇의 創設
(24) 《皇壇配享諸臣目錄》(奎章閣圖書 No. 1325) p. 7.
(25) 주(20) 참조.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정조의 일에 대한 추진력과 이 작업의 성격으로 보아 몇년씩 끌었을 것 같지 않으므로 1797년 경이라고 생각된다.

〈表 1〉 丙子胡亂時 江華·南漢山城 殉節·斥和人

祠名	地名	建立年	賜額年	被祀人	職名	諡號	殉節內容	備考
忠烈祠 (江都殉節諸臣)	江華	1642 (인조 20)	1658 (효종 9)	金尙容	領議政(贈)	文忠	丁丑(1637) 강화에서 自焚	
				李尙吉	左議政(〃)	忠肅	〃 〃 〃 自縊	
				洪命亨	吏曹判書(〃)		〃 〃 〃 自燒	김상용과 同死
				李時稷	〃 (〃)	忠穆	〃 〃 〃 自經	
				尹 棨	〃 (〃)	忠簡	〃 〃 南陽府使 殉職	三學士의 尹集의 형
				黃善身	兵曹判書(〃)		〃 〃 강화에서 戰死	
				權順長	左贊成(〃)	忠烈	〃 〃 〃 〃	김상용과 同死
				金益兼	領議政(〃)	忠正	〃 〃 〃 自燒	〃
				沈 諟	吏曹判書(〃)	忠烈	〃 〃 〃 自縊	부인 宋氏와 同死
				尹 烇	〃 (〃)	忠憲	〃 〃 〃 被害	自縊→自到→被害
				李惇五	〃 (〃)	忠顯	〃 〃 〃 〃	
				宋時榮	左參贊(〃)	〃	〃 〃 〃 自經	司僕主簿
				具元一	兵曹參議(〃)		〃 〃 〃 投海	
				姜興業	〃 (〃)		〃 〃 〃 戰死	
顯節祠 (南城斥和·瀋陽殉節諸臣)	南漢	1688 (숙종 14)	1693 (숙종 19)	金尙憲	領議政(〃)	文正	〃 〃 南漢山城 斥和	심양에 끌려가 옥살이 6년에 귀환.
				鄭 蘊	〃 (〃)	文簡	〃 〃 〃 〃	自刺하였다가 덕유산에 은퇴.
				洪瀷漢	〃 (〃)	忠正	〃 〃 〃 〃	심양에 잡혀가 遇害.
				尹 集	〃 (〃)	忠貞	〃 〃 〃 〃	〃 〃
				吳達濟	〃 (〃)	忠烈	〃 〃 〃 〃	〃 〃

※ (贈)은 贈職의 약자임.

하여 피란하였다가 강화도에 갔던 사람들은 거의 자살로써 殉國하였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던 이들은 1637년 이른바 「丁丑의 下城」 때에[26] 斥和論을 주장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이다. 강화도에는 忠烈祠를 세워 殉節人을 享祀하고 남한산성에는 顯節祠를 세워 斥和人을 享祀하였다.

강화도의 忠烈祠는 1642년(인조 20)에 건립되었고 1658년(효종 9) 賜額을 받았는데 金尙容(1561～1637) 등 14인을 제향하였다. 이들은 거의 고위직을 追贈받았고 시호도 받았다. 殉節行爲도 自焚·自燒·自縊·自經·被害·投海·戰死로[27] 세밀하게 구분하였다.

남한산성의 顯節祠는 1688년(숙종 14)에 건립되었고 1693년(숙종 19)에 賜額되었다. 金尙憲(1570～1652), 鄭蘊(1569～1641)의 두 斥和大臣과 洪瀷漢(1586～1637)·尹集(1606～1637)·吳達濟(1609～1637)의 三學士를 제향하였다. 이들 다섯사람은 모두 최고위직인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또한 시호도 받았다. 이들 남한산성 斥和人들을 더 높이 존숭한 이유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기능한 北伐論과 尊周論이 斥和論에 기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言官으로서 斥和論을 國論으로서 지키다가 그 속죄양이 되어 심양에까지 끌려가 갖은 협박과 회유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선사대부의 지조를 지킨 三學士에 대한 현창은 두고 두고 계속되었다.[28] 諡號 또한 모두 「忠」자를 받았다.

이상의 忠烈祠 14인, 顯節祠 5인의 19인은 1757년(영조 33년) 대보단에서 望拜禮를 행할 때 그 자손들에게 특별히 參班을 명하였다. 1764년(영조 40)에는 忠良科를 설치하여 그 자손들에게 특별시험을 실시하여 文科·武科에 급제시켰다.[29] 1757년은 丁丑년으로 1637년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청태종에게 항복한지 120년, 즉 2周甲이 되는 해고 1764년은 甲申년으로 1644년 명나라가 망한지 역시 120년의 2周甲이 되는 해이므로 이 역사적 치욕을 잊지 않고 그에 관련되는 충신·열사에 대한 예우를 새롭게 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였던 것이다.

〈表 2〉는 1619년 明軍이 만주의 여진족을 토벌할 때 宣川郡守로서 출전하였다가 전사한 金應河(1580～1619)와 1627년 丁卯胡亂때 전사한 인물들에 관한 것이다. 김응하는 영의정에 추증되고 忠武의 시호를 받았으며 그의 연고지인 昌城의 忠烈祠, 宣川의 義烈祠, 鐵原의 褒忠祠에 제향되었다. 「忠烈」이라는 이름은 당시 가장 애용되었던듯 강화도의 그것 외에도 여러 곳에 산재하였다. 이 忠烈祠는 처음에 義州에 있었는데 만주와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1695년(숙종 21)에 昌城으로 이전하여 동시에 賜額하였다. 창성은 김응하가 深河전투에 出師한 길이다. 宣川은 김응하가 郡守로 재직하였던 곳이고 鐵原은 그가 거주하던 고을이었다.

---

(26) 병자호란 다음해인 丁丑年에 청태종에게 항복하여 남한산성에서 내려왔으므로 그 치욕스러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여 「丁丑의 下城」으로 조선 후기 사회에서 일컬었다.

(27) 自焚과 自燒는 불에 타서 자살하는 것은 같은데 그 차이점은 自焚이 화약같은 폭발물에 불을 붙여 자살하는 것이고 自燒는 불에 뛰어 들어 죽는 것을 뜻하는 것같다. 自縊과 自經은 목매어 죽는다는 뜻인데 특히 自縊(자액)은 밧줄을 늘이고 목을 매 목이 막혀 죽는 것을 말한다.

(28) 前揭 拙著《朝鮮後期 知性史》1장 1절 三學士에 대한 再照明

(29) 주(24)와 같음

〈表 2〉 1619년 만주파병 金應河와 丁卯胡亂時 安州 戰死者

祠名	地名	建立年	賜額年	被祀人	職名	諡號	殉節內容	備考
忠烈祠	昌城	1695 (숙종 21)(移)	1695 (숙종 21)	金應河	領議政(贈)	忠武	1619년 宣川郡守로 明軍을 도와 만주를 토벌하다 전사함	義州에서 이건함
義烈祠	宣川	1697 (숙종 23)	1733 (영조 9)	〃	〃	〃	〃	
褒忠祠	鐵原	1665 (현종 6)	1668 (현종 9)	〃	〃	〃	〃	
忠愍祠	安州	1681 (숙종 7)	1682 (숙종 8)				丁卯胡亂(1627)때 安州에서 殉難한 인물들	
				南以興	左議政(贈)	忠壯	丁卯 平安兵使로 自焚	
				朴命龍	兵曹判書(〃)	忠愍	〃 平安虞候로 戰死	
				金浚	左贊成(〃)	壯武	〃 安州牧使로 自焚	
				李尙安	〃 (〃)	忠愍	〃 江界에서 遞任하여 돌아오다 安州城에 가서 전사	
				全尙毅	兵曹判書(〃)		〃 龜城府로 安州에서 전사	
				李希建	左贊成(〃)	壯烈	〃 龍川府使로 〃	
				宋圖南	吏曹判書(〃)	忠愍	〃 永柔縣令으로 〃	
				張暾	玉山君		〃 甑山縣令으로 〃	玉山府院君 晩의 弟
				尹惠	博川郡守		〃 博川郡守로 〃	
				金良彥	判中樞(贈)		〃 南以興 從軍 〃	물에 몸을 던져 죽음
				宋德榮	延昌君		〃 孟山縣監으로 〃	殉節
				金彥壽	兵曹參議(贈)		〃 安州 東城에서 전사	
				韓德文	訓鍊正(〃)		〃 〃 北城에서 전사	
				咸應秀	戶曹佐郎(〃)		〃 〃 守門將으로 전사	
				梁晋國	同知中樞(〃)		〃 〃 中軍으로 殉難	
				林忠恕	訓鍊正(〃)		〃 〃 千摠으로 〃	

※ (移)는 移建의 약자임.

〈表 3〉 丙子胡亂 以後 殉節 追享人

祠 名	地 名	建立年	賜額年	被祀人	職 名	諡 號	殉 節 內 容	備 考
義烈祠	慈 山	1636 (인조 14)	1671 (현종 12)	崔春命	高麗樞密副使		1231년 몽고군에 끝까지 항전	崔沖의 후손
			1671 追享	洪命耉	領 議 政(贈)	忠 烈	1636년 丙子胡亂時 慈母城 주둔	平安道 觀察使였음
			1703 追享	崔景候	高麗慈州副使			
			〃	金之行	〃 判官			
忠烈祠	金 化	1650 (효종 1)	1652 (효종 3)	洪命耉	領 議 政(贈)	忠 烈	1636년 丙子胡亂時 金化戰死	
顯忠祠	義 州	미 상	1788 (정조 12)	林慶業				
			〃	崔孝一				
			(1796 追配)	黃一皓	左 贊 成(贈)	忠 烈	1638년 崔孝一과 심양공격모의하다 살해됨	
			〃	車忠亮	兵曹參議(〃)		1627년 丁卯胡亂 방어. 1639년 崔孝一 지원. 1641년 아우 車禮亮과 瀋陽에 감	
			〃	車禮亮	兵曹參判(〃)		崔孝一을 登州에 보내 심양공격모의. 누설되어 피해.	
			〃	車元轍	兵曹參議(〃)		1641년 車禮亮 사건에 연좌사.	車禮亮의 6촌아우
			〃	車孟胤	〃 (〃)		車忠亮事에 同死	車忠亮의 아들
			〃	安克誠	兵曹參判(〃)		崔孝一事로 죽음	崔孝一 친구
			〃	張厚健	兵曹參議(〃)		〃	〃 생질
忠節祠	星 州	1689 (숙종 15)	1796 (정조 20)	李士龍	星州牧使(〃)		1638 淸軍에 從軍하다 저항사	이사룡은 성주 사람

安州의 忠愍祠는 1627년 정묘호란 때 북경지역의 관리로서 전사한 16인을 제향한 곳이다. 평안감사 南以興(1540~1627)을 위시하여 모두 현직에서 책무를 다하다 전사 순직하였지만 李尙安(1575~1627) 같은 경우 강계부사에서 전임되어 귀경하다 전란소식을 듣고 安州로 달려가 전투에 합류하였다가 전사한 경우다.

〈表 3〉은 병자호란 이후 殉節人으로 뒤에 追享된 인물들이다. 慈山의 忠烈祠는 고려 때 對蒙항쟁시 慈州副使로 항전한 崔春命(?~1250)을 主享하였는데 1671년(현종 12) 洪命耉(1596~1637)를 追享하였다. 홍명구는 병자호란시 평안도 관찰사로서 이곳 慈母城에 주둔하였었다. 홍명구 단독 사우로서 1650년(효종 1) 金化에 忠烈祠가 건립되고 2년 후인 1652년(효종 3)에 사액되었다. 금화는 홍명구가 전사한 곳이다.

義州의 顯節祠는 원래 林慶業(1594~1646)과 崔孝一(?~1644)의 제향 사우였던바 1796년(정조 20) 병자호란 후 청을 공격하는 거사에 참가하였다가 죽음을 당한 黃一皓(1588~1641) 등 7인의 義士를 追配하였다. 星州의 忠節祠에는 1638년 청군이 중원을 치고 들어갈 때 징발당한 星州牧使 閔光勳을 종군하다 저항하여 죽은 李士龍을 제향한 곳이다. 성주는 이사룡의 고향이었다.

〈表 4〉는 대보단의 望拜禮시에 특별히 그 후손을 參班시킨 李舜臣·林慶業·宋時烈·尹煌·申翼·崔孝一·趙廷翼 등 八家의 도표다. 임진왜란의 명장 이순신 외에는 모두 對淸항쟁관련 인물들이다. 임경업은 1643년 중국 登州로 가서 심양토벌을 획책하다 체포되어 갖은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는데 沈器遠의 모반에[30] 연루되어 귀국하였다가 金自點에게 被

〈表 4〉 特敎參班諸家

人 名	職 名	諡號	參班被命年	事 由	備 考
李舜臣	領 議 政(贈)	忠武	1793 (정조 17)	1592년 壬辰倭亂時 兩湖倭寇 소탕	
林慶業	左 贊 成(〃)	忠愍	〃	1643년 登州에 가서 심양토벌을 모의하다 체포됨.	金自點에게 피해됨
宋時烈	領 議 政(〃)	文正	1787 (정조 11)	孝宗과 北伐大義수립. 萬東廟설립	
尹 煌	〃 (〃)	〃	1794 (정조 18)	丁卯胡亂時 斥和	
				丙子胡亂時 斥和臣 자처	永同에 유배→不復仕
申 翼	吏曹判書(〃)	孝義	1790 (정조 14)	忠孝大節. 1644년 明亡후 은거	1788년 旌門忠孝. 1796년 加贈賜諡
崔孝一	兵曹判書(〃)	忠壯	1796 (정조 20)	1638년 심양공격모의. 1644년 明亡에 不食死	1715년 兵曹參判. 1796년 加贈賜諡
趙廷翼	吏曹判書(〃)	忠肅	〃	丙子胡亂(1636년) 강화도에서 투신자살	1796년 加贈賜諡

(30) 심기원은 인조의 반정공신으로 고속 승진하여 좌의정에까지 이르렀으나 1644년 남한산성 수어사를 겸임하게 되자 장사들을 끌어 모아 懷恩君 德仁을 추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사전에 탄로되어 주살되었다.

〈表 5〉 殉　節　諸　臣

No.	人　名	職　　名	諡　號	殉　節　內　容	備　　考	典　據
1	吳　稷	千　摠		1619년 深河之役에서 전사	贈職(효종) 旋閣(숙종)	國朝寶鑑
2	張繼光	〃		〃	〃　〃	〃
3	金秀南	同副承旨(贈)		丙子胡亂時 刑曹分司正郎으로 自燒死	(贈職旋閣) 1755년(영조31) 禮曹에서 抄啓함	〃
4	李惇叙	戶曹參判(〃)		〃　강화도에서 투신사	〃	〃
5	鄭雷卿	左 贊 成(〃)	忠　貞	1637년 丁丑下城시 斥和臣, 昭顯世子 수행, 역관문제로 연좌사		〃
6	池汝海	兵曹參判(〃)		丙子胡亂時 體府別將으로 전사		〃
7	李義培	領 議 政(贈)	忠　壯	1637년 忠淸兵使로 雙嶺戰死		〃
8	許　完	兵曹判書(〃)	〃	〃　慶尙左兵使로 雙嶺自刎死		〃
9	閔　泳	慶尙右道 兵馬節度使	〃	〃　雙嶺戰死		〃
10	崔震立	兵曹判書(贈)	貞　武	1636년 公州鎭營將으로 龍仁戰死	忠淸監司 從軍	〃
11	李尙載	金井察訪		〃　龍仁戰死	1741년(영조 17) 贈職	〃
12	金弘翼	吏曹判書(贈)	忠　愍	〃　連山縣監으로 龍仁戰死	贈職旋閣	〃
13	李慶善	參　判(〃)		〃　藍浦縣監으로　〃	李時發의 아들	〃
14	李　楗	縣　監		〃　龍仁戰死	1741년(영조 17) 子孫을 錄함	〃
15	黃　珀	府　使		〃　〃		〃
16	許　輅	順安縣令		1637년 金化戰死	洪命耆從軍	〃
17	具賢俊	郡　守		〃	柳琳　〃	〃
18	鄭百亨	都 承 旨(贈)		丙子胡亂時 강화에 갔다가 1637년 自殺	顯宗己丑(?) 贈職旋閣	〃
19	閔　垶	戶曹判書(贈)	忠　懿	丙子胡亂時 강화도에 솔가 義旅소속	일가 13인 同死	碑誌野乘
20	金　瑄	左 贊 成(〃)	愍　肅	1637년 成州府使로 義兵모집하다 被害		〃
21	李嘉相	修　撰(〃)		〃　강화도 마니산에서 殉死	李明漢의 아들	〃

No.	人名	職名	諡號	殉節內容	備考	典據
22	鄭 洙	永同縣監		1637년 강화도 마니산에서 殉死	鄭澈의 손자	碑誌野乘
23	洪晬元			1636년 강화도에서 계모 許氏와 同死	洪翼漢의 아들	〃
24	李 部	持 平(贈)		〃 〃 義兵으로 활동하다 死亡	李翻의 형	〃
25	尹 城			1637년 〃 殉死	尹昉의 손자	〃
26	宣世綱	安東營將		1636년 安東兵士로서 雙嶺戰死	許完從軍	〃
27	李有吉	兵曹參判(贈)		1619년 永柔縣令으로 深河戰死	金應河와 同死	〃
28	金 雲	工曹參判(〃)		〃 訓鍊判官으로 〃	〃 從軍, 旌閭	〃
29	李繼宗	雲山郡守		〃 深河戰死	〃 同死	〃
30	金堯卿	千 摠		金應河와 深河에서 同死		〃
31	金佐龍	〃		深河에서 戰敗死		〃
32	奇 協	宣川府使		丁卯胡亂(1627년)時 宣川府使로 戰死		〃
33	金時若	昌城府使		〃 昌城府使로 不屈死		〃
34	李 莞	兵曹判書(贈)	忠愍	〃 義州에서 自焚死	旌閭	〃
35	崔夢亮	吏曹判書(〃)	忠毅	〃 義州判官으로 戰死	가족 3인 殉難	〃
36	李世寧	祥原君	忠烈	1637년 강화도에서 殉死	成宗 후손	〃
37	李士珪	兵曹佐郎		〃 사망	徒手冒刃死	〃
38	姜潤聘	左承旨(贈)		〃 被害	贈職旌閭	〃
39	孫宗老	藍浦縣監		1636년 雙嶺 許完진영에서 사망		〃
40	裵命純	德源府使		1637년 淸兵 후퇴시 戰死		〃
41	申誠立	漢城判尹(贈)		1636년 體府別將으로 남한산성에서 전사		〃
42	柳 秩	鐵原府使		1637년 철원을 사수하다 순직		〃
43	鄭奇男	兵曹參判(贈)		壬亂戰功, 1619년 金應河從軍死	1707년(숙종 33) 贈職旌閭	〃

〈表 6〉斥　和　諸　臣

人名	職名	諡號	斥和內容	備考	典據
尹文擧	大司憲	忠敬	丙子胡亂時 아버지 尹煌 대신 縛送 희망	尹煌은 斥和大臣	國朝寶鑑
金壽翼	吏曹判書(贈)	忠景	〃 청나라 진영에 縛送 희망. 유배		〃
金益熙	大提學	文貞	〃 淸의 尊號반대. 斥和臣 지목	孝宗 北伐計劃 도움	〃
李行遇	副提學		1637년 斥和臣 11인 중 하나로 몰림		〃
洪　瑑	右　尹		〃 〃		〃
李命雄	吏曹判書		丙子胡亂時 言官(司諫), 斥和臣	崔鳴吉 論斥	〃
李敬輿	領議政	文貞	1637년 慶尙觀察使로 明遺民 보호	瀋陽獄苦	國朝寶鑑
兪伯曾	〃 (贈)	忠景	丁卯胡亂時 斥和, 丙子胡亂時 斥和	金壇 성토	〃
兪　棨	左贊成(〃)	文忠	丙子胡亂時 斥和臣 縛送 반대	孝宗 北伐計劃 도움	〃
金慶餘	領議政(〃)	文貞	1637년 청에 비협조. 1644년 明皇 조문	〃 北伐大義 협찬	〃
李　粲	〃 (〃)	忠貞	丁卯胡亂時 斥和, 1637년 協守使로 호종	1755년(영조 31) 賜諡	〃
曹漢英	吏曹判書(〃)	文忠	丙子胡亂時 淸使臣 환영연에 불참, 청의 포로→불굴		〃
洪宇定	大君師傅		1637년 태백산으로 들어가 은거	太白五賢중 一人	〃
蔡聖龜	副提學(贈)		丙子胡亂時 抗疏斥和. 1637년 斥和臣 옹호		〃
李　俌	綾原大君	貞孝	〃 和議不可論. 淸나라 年號 不用	仁祖의 아우	〃
李尙馨	副提學(贈)		〃 李命雄·尹集 등과 斥和	崔鳴吉 論斥	〃
金德誠	領議政(贈)	忠貞	丁卯胡亂時 淸 國號 강요에 반대	華夷論제창	碑誌野乘
兪　榥	左贊成(〃)	忠簡	丙子胡亂時 南漢山城 扈駕. 斥和疏		〃
尹鳴殷	全羅監司		丁卯胡亂時 太學生 이끌고 首斥和議		〃
尹衡志	副提學(贈)		〃 太學生으로 江都扈駕 斥和	1796년(정조 20)贈職	〃
李　忔	領議政(〃)	忠章	〃 江都에 들어가 斥和	1629년 入明使臣순국	〃
申　恂	左贊成	忠貞	丙子胡亂時 江都에서 斥和 不屈	연좌되어 쫓겨남	〃
任有後	吏曹判書(贈)	貞僖	丁卯胡亂時 江都에서 斥和. 丙子胡亂時 江原都事로 모병		〃
洪處厚	左贊成(〃)	忠莊	丙子胡亂時 淸의 國號 受容반대	堤川縣監으로 좌천	〃
李緯國	參　判(〃)		丁卯胡亂時 戰功, 丙子胡亂時 楊根주둔		〃
尹知敬	應　敎		〃 輔德으로 斥和上疏	斥和三尹중 一人	〃

害당했다. 宋時烈은 北伐大義 수립의 공으로, 尹煌은 斥和大臣으로, 申翼은 1644년 명이 망한 후 은거한 忠孝大節로, 崔孝一은 1638년 심양공격을 모의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1644년 명이 망하자 굶어죽었던 忠節로, 趙廷翼은 병자호란때 강화도에서 투신자살한 殉節로 각각 현창되었던 것이다. 자손에게 특별히 參班을 명함으로써 가문과 후손에게 국가적으로 영광을 기렸던 것이다.

〈表 5〉는 여진→청과의 관계에서 殉節한 諸臣에 관한 기록의 도표이다. 1619년 深河之役, 1627년 丁卯胡亂, 1636년 丙子胡亂 관련 忠臣·烈士들로 앞의 표들에서 누락된 이들을 총정리한 것이다. 모두 43인인데 몇 개의 범주로 유별화되어 있다.

〈表 7〉 秉 義 諸 臣

人名	職名	諡號	秉義內容	備考	典據
鄭鳳壽	兵曹判書(贈)	襄武	丁卯胡亂時 義士규합 戰功	동생 麟壽 同戰	國朝寶鑑
李 廓	〃 (〃)	忠剛	丙子胡亂時 回答使로 瀋陽에 감	淸의 尊號 不容	〃
羅德憲	〃 (〃)	忠烈	〃 春信使로 〃		〃
李 珖	義昌君	敬憲	〃 扈駕南漢山城. 世子인질 반대	宣祖의 八男	〃
申翊聖	東陽尉	文忠	丙子胡亂時 저항. 청태종 공적비문 거절	瀋陽에 잡혀감	碑誌野乘
蔡以恒	吏曹判書(贈)	景憲	1637년 江都 천도주장.	瀋陽에 잡혀감. 不屈 瞬還	〃
李 浣	右議政	貞翼	林慶業과 여진의 동향 명에 제보	孝宗의 北伐治兵담당	〃
蔡得沂	氷庫別提		1637년 瀋陽에 가서 孝宗경호	귀국후 은퇴	〃
李興涬	吏曹參議(贈)		1636년 淸使斬首 주장 鄭弘溟從軍	亂後은퇴. 旌閭	〃
李起涬	都承旨(〃)		1637년후 終身不仕	李興涬의 동생. 旌閭	〃
許 格	吏曹參議(〃)		〃 과거 폐하고 태백산 은거	崇禎處士로 불림	〃
鄭 栻	持平(〃)		〃 〃 武夷山 은거	明庵處士로 自號	〃
田 闢	左承旨(〃)		〃 淸의 請軍에 징발불응	南漢山城 유배	〃
許 灌	察訪		丙子胡亂時 扈駕. 〃	〃	〃
閔 業	處士		〃 和議成立후 閉門不出	金長生 門徒	〃
金 埈	司諫		〃 嶺南擧義出資. 閉戶終身	海東伯夷로 불림	〃
李必行	相禮		〃 講和반대. 不仕九年卒	李浚慶 後孫	〃
宋浚吉	左參贊	文正	孝宗때 儒逸로 宋時烈과 北伐大義 협찬		〃

첫번째 吳稷과 두번째 張繼光은 효종 때 贈官하고 1681년(숙종 7)에 旌閭하였고 그 근거는 《國朝寶鑑》이었다. 3번 金秀南부터 6번 池汝海까지 4인은 1755년(영조 31) 병자호란에 순절하였으나 누락되었던 사람들을 예조에 抄啓하여 올리라는 명을 내려 致祭케한 것이다. 역시 《國朝寶鑑》이 근거였다. 앞표에서 보이는 崔孝一(표 3,4)·李惇五(표 1)·黃一皓(표 3)와 동시에 賜祭하였다. 7번 李義培부터 17번 具賢俊까지 11인은 1755년(영조 31) 丙子戰亡人을 抄啓하여 致祭할 것을 예조에 명하여 현창된 경우다. 전거는 역시 《國朝寶鑑》이었다. 18번 鄭百亨은 《國朝寶鑑》에 사적이 기록되어 있고 1796년(정조 20년) 재조명하였으나 미해결되었었다. 19번 閔倅부터 43번 鄭奇男까지 25인은 碑誌와 野乘(野史)에서 雜見되는 것을 채집한 경우이다. 모두 청나라관계 殉節諸臣인데 1619년 深河戰에 출전하였던 27번 李有吉부터 31번 金佐龍까지 5인과 1627년 丁卯胡亂때의 전사자인 32번 奇協부터 35번 崔夢亮까지 4인 등, 9인을 제외하고는 34인 전부 병자호란의 순절인들이다.

〈表 6〉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때의 斥和諸臣들이다. 尹文擧·金壽翼·金益熙·李行遇·洪琢·李命雄 등 여섯 사람은 남한산성의 顯節祠에 제향된 김상헌·정온·오달제·윤집(표 1 참조)과 윤황 (표 4)을 포함하여 「斥和十一人」로 불렸다.[31] 역시 《國朝寶鑑》에 근거하였다.

(31) 《皇壇配享諸臣目錄》 p. 37

다음 李敬輿로부터 李尙馨까지 10인은 1755년(영조 31)에 丙子斥和人을 抄啓하여 올리라고 예조에 명하여 賜祭하였는데 李尙馨은 누락되었다가 다음해에 贈職하고 賜祭할 것을 특명하였다. 전거는 《國朝寶鑑》이었다. 이 중 洪宇定은 병자호란 후 沈長世·鄭瀁·姜恰·洪錫과 함께 太白山에 은거하여 나라에서 여러번 징소하였으나 나아가지 않고 절의를 지켜 「太白五賢」으로 불렸다.(32)

金德誠부터 尹知敬까지 10인은 碑誌와 野乘에서 雜見된 것을 채록하여 현창한 것이다. 특히 尹知敬은 尹煌(표 4)·尹衡志(표 6)와 함께 「斥和三尹」으로 世稱되었다.(33)

〈表 7〉은 「秉義諸臣」이라 하여 적극적인 척화는 안했더라도 義理를 지켜 은퇴하였거나 그 흐름을 계승하였던 이들이다. 계속적인 현창작업의 결과 저항의 강도에 있어 전기 표의 인물들보다 덜한 이들을 모아 현창한 것으로 보인다. 鄭鳳壽·李廓·羅德憲·李珖 4인은 《國朝寶鑑》이 근거이고 申翊聖부터 宋浚吉까지 14인은 碑誌·野乘이 전거다. 이중 李浣(1602～1674)은 효종의 北伐大義에 동참하여 治兵을 담당하였고, 宋浚吉(1606～1672)은 儒逸(山林)로서 정치일선에 나와 宋時烈(표 4)과 함께 北伐大義를 협찬한 공이었다.

이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北伐論은 斥和論의 계승이라는 인식이 당시대인의 일반적 공감대였던 것이다. 또한 전란 중에 사망한 인물 이외에 생존하여 義理를 지킨 인물들이 모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18세기에 이르러서 더욱 활발한 추모사업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작업은 숙종 후반기와 영조대를 거쳐 정조대까지 계속되어 碑誌나 野乘, 즉 野史까지 샅샅이 찾아내고 그 事蹟의 輕重에 따라 정리하고 응분의 예우와 자손에 대한 배려까지 게을리하지 않았다. 1592년 임진왜란부터 1636년 병자호란까지 40여년 兩亂의 후유증 극복작업은 2세기에 걸쳐 끈질기게 일관되었던 것이다.

맺 음 말

이상으로 《皇壇配享諸臣目錄》이라는 제사관계자료의 실제와 그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자료의 성격상 조선후기 享祀關係 기록인 이만운의 《俎豆錄》에 편입되어야 할 것이지만 시기상 《조두록》의 초고보다 7·8년 뒤늦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철종대 이후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두록》에 大報壇 항목으로 간략하게 편입되어 있다. 여기에는 文廟·太廟 다음에 편입되어 있고 설치장소·제사일시·제사대상으로서의 明太祖·神宗·毅宗과 그 배향인물인 徐達·李如松·范景文에 대한 간단한 사항만 부기하고 있다.

그러나 18세기, 19세기에 皇壇으로 통칭되던 大報壇은 對明義理論인 尊周論에 입각한 中華文化秩序의 수호 내지는 조선문화의 보존논리를 위한 장치였기 때문에 임진왜란과 병자

(32) 위책 p. 42
(33) 위책 p. 48

호란 때의 충신·열사는 곧 中華文化의 수호자로 인식되어 대보단에 제향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된 것이다.

그 제향대상인물들을 세밀하게 분류하여 인사기록으로 남긴 자료가 《皇壇配享諸臣目錄》이므로 조선시대 충신·열사 추모사업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병자호란 때의 斥和論이 北伐論과 尊周論으로 계승되어 17세기 조선사회의 지도이념화하면서 조선사회재건의 원리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18세기에 이르러 숙종 후반기·영조대에 본격적으로 국가적인 추모사업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大報壇의 제사에 참가시키고 忠良科라는 특별과거시험을 통하여 등용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신명을 바친 선조들에 대한 보답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皇壇配享諸臣目錄》의 편찬연대가 《尊周彙編》의 그것과 일치하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 크다. 1796년(정조 20) 정조는 《尊周彙編》의 편찬을 명하였고 〈表 3〉에서 확인하듯이 그때까지의 추숭작업에서 누락된 인물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대보단에 追配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이 자료는 1796년부터 정리되기 시작하여 1797년경에 편찬되었을 것이며 《尊周彙編》의 편찬과 동일선상에서 추진되었던 것이다. 兩亂의 忠臣과 烈士에 대한 국가적 현창과 평가작업이 18세기말에 와서야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2세기에 걸쳐 양난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경주되어 일단락을 지은 것이다.